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권 영 식 의원 발의】



2018.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호로 2018년 8월 31일 권영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제8조)

마.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9조~제12조)

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추진(안 제13조~제21조)

-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수목·산림 확충, 자동차 사용자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

사. 기후변화영향 조사 실시(안 제23조)

아.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구민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기후
변화 대응 활동 촉진(안 제25~제26조)

자. 기금의 설치, 재정지원 등(안 제27조~제2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추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1장부터 제5장 까지 총 29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으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영등포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 안 제7조~제8조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제12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심의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제21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 사용자제, 공회전 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구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영향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25조~제26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구민 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과 실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 안 제27조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2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자원순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5조(자치구의 책무) ① 자치구는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자치구는 기후변화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